第306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2年2月27日(月)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2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35.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4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5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5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62.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6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7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8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최종원·김재윤·장병완·이석현·강창일·김영진·강기정·송민순·박은수·양승조 의원 발의) ····· 10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0
3.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0
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0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
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최경희·이윤성·김태원·박보환·김소남·유정현·허천·임동규·김호연·이한성·신상진·정양석·황영철·유정복·최연희·이낙연·박기춘·원혜영·이춘석·김영진·안규백·전혜숙·김세연·정갑윤 의원 발의) ····· 11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이은재·원유철·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무영·서상기·장광근·이윤석 의원 발의) ····· 11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최경희・이은재・정미경・안효대・김성동・김성수・이정선・정해걸・정갑윤 의원 발의) ····· 11
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 ····· 11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전병헌・이찬열・남경필・권영길・안홍준・홍사덕・김용구・김상희・원혜영・정미경 의원 발의) ····· 11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정수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송광호 의원 발의) ····· 11
12.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
2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2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11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최종원・김재윤・장병완・이석현・강창일・김영진・강기정・송민순・박은수・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1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4
3.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4
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14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14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4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4
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4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4
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최경희・이윤성・김태원・박보환・김소남・유정현・허천・임동규・김호연・이한성・신상진・정양석・황영철・유정복・최연희・이낙연・박기춘・원혜영・이춘석・김영진・안규백・전혜숙・김세연・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22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이은재・원유철・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무영・서상기・장광근・이윤석 의원 발의)(계속) ····· 22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최경희・이은재・정미경・안효대・김성동・김성수・이정선・정해걸・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22
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 22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전병헌・이찬열・남경필・권영길・안홍준・홍사덕・김용구・김상희・원혜영・정미경 의원 발의)(계속) ····· 22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정수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송광호 의원 발의)(계속) ····· 22
12.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22
2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2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김장수・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 29
2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 29
2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 30
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 30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심재철・김용태・권택기・정태근・정두언・한기호・장광근・이용섭・신건・김동철・이사철・임영호・이진복・현기환 의원 발의) ····· 31
28.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31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장 제출) ····· 31
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4
1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4
1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5
104.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5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5
35.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원혜영・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 45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 ····· 45
3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창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춘석・이시종・조정식・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 45
3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곤 의원 발의) ····· 45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김세연・김옥이・김태환・조전혁・이진복・고흥길 의원 발의) ····· 45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5
4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5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5
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발의)(김성동·김혜성·허원제·원희목·한선교·오제세·이애주·강명순·손숙미·이철우 의원 발의) ····· 46
4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조배숙·유선호·김부겸·김성곤·정장선·장병완·조영택·김우남·전현희·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 46
4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유선호·김부겸·김성곤·정장선·장병완·조영택·김우남·전현희·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 46
4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6
4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이경재·최인기·한선교·이낙연·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 ····· 46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우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준비 때문에 지역구 활동 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현 파견판사님이십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약 1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정치관계 특위에서 넘어온 선거법 관련 규정들입니다.

이 법이 아마 12시 정도에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법안이 처리되는 직후에 맨 먼저 최우선적으로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다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에 앞서서 주성영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주성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매매 진정사건 소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성매매를 했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만약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면 생명을 걸겠습니다.

2012년 2월 23일 11시경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로서 예정된 간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막 도착하는 순간 대구지방검찰청 모 계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성매매 의혹으로 진정서가 대구지검에 접수되었으므로 소환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전화를 드리겠노라고, '0535로 찍혀 있는 이 번호로 드리면 되지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화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제가 법무부장관과 이튿날 아침 연결된 검찰총장과 통화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두 분은 일선에서 하는 일이라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이튿날 24일 날 저에게 우편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우편물을 들어 보이며)

봉투에는 익일특급이라는 소인이 찍혀 있는 봉투였고, 내용을 열어봤더니 2012년 진정 제91호, 올해 접수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하는 검사는 홍승욱 검사였습니다. 이게 24일 날 상황이었어요.

24일 날 저녁이 되자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했

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대구지검에서 소환을 받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간신문에 내용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통화에서 이것은 음모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매매를 했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면 생명을 걸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 관련 사항입니다.

제가 2월 25일 날 오후에 대구 지역구로 내려갔습니다. 이 특정 예비후보는 1월 중순경부터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주성영 의원을 낙마시킬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원들이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여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보고를 25일 날 받았어요.

그 전에 제가 지역구에 못 내려간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치개혁특위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소환장을 받기 전 이틀도 우리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지검 모 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던 23일 날 11시경, 11시 30분경에 제 지역의 권모 시의원—저의 보좌관 출신입니다—에게 대구 TBC 방송국의 박모 기자가 전화를 했답니다. 이게 검찰청 계장이 전화한 그 11시, 11시 30분입니다.

저의 경쟁자인 우리 지역구의 특정 예비후보 측 사람들이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주성영 의원이 28일 날 홍승욱 검사실에서 성매매 혐의로 소환을 받았다는데 알고 있느냐, 사실이냐,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우리 권모 시의원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도 우리 권모 시의원으로부터 제 소환 날짜가 28일 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홍승욱 검사가 주임검사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검찰 측에서 이렇게 한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역 법사위원으로 검찰에다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청춘을 검찰에서 보냈습니다.

(우편물을 들어 보이며)

진정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피진정인을 소환하는 예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회기 중에, 그것도 매일 아침저녁 TV 뉴스, 신문 보도에 주성영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국회에 매일 출석해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사법개혁특위 간사로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을 이끌어내고 중수부 폐지 주장과 함께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나누리당 의원 가운데 주성영 의원을 지목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 지역구의 경쟁 특정 예비후보와 공모한 점도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고 정치공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위를 불문하고 현역 의원이 성매매 의혹을 받아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수치를 넘어서 국회의원으로서 흠입니다.

앞으로 검찰 진정사건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냐, 저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매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검찰이 의도했던 그런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자신 있으면 기소하십시오.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8년간 법사위원으로, 법사위 간사위원으로 1차 사법개혁, 공판중심주의, 재정신청 전면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특위의 간사로서 2차 사법개혁을 8부 능선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가 특별수사청 설치와 양형기준법 문제 등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를 떠나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의 요체를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95%의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5%의 공안사건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고 꾸중을 들었어요.

오늘날은 공안사건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학원 문제든지 노동 문제든지…… 요즈음은 5%의 특수사건, 권력층의 특수사건 수사를 잘못해서 모든 검찰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자는 것이지요.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수사를 맡기고 일반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힘을 써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해 달라는 게 요체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이원화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의 의원 생활을 접고 또 8년 동안 이곳 법사위에서만 일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여러분과 작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법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과 저도 법사위에서 17대, 18대 여야 동료 위원으로 또 여야 간사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은 일로 존경하는 동료이자 같은 법사위원회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주성영 위원의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검찰이 엄정한, 공정한 수사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주성영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한 신상발언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주성영 위원과는 지난 4년간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고 미워하기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성영 위원께서 검경 수사권 독립과 경찰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고 참으로 존경해 마지않았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이 정도 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저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주성영 간사의 협력이 없었던들 민주당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위원마저도 이러한 검찰로부터의 고초를 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성영 위원은 검찰 출신으로 공수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주성영 위원께서는 성매매를 했다고 하면 목숨을 걸겠다, 동남아를 다녀왔다면 생명을 걸겠다 했습니다. 최소한 검찰은 국회의원이건 일반국민이건 내사를 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만 주성영 위원의 말씀에 의거하면 틀림없이 동남아에서 성매매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주성영 위원의 출입국 관리 기록만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겠는가 저는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도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회장 사건 등 모든 것이 수사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 예민한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딸을 재수사한다라는 보도를 보고 저는 또 이 이명박 정부에서 야당 죽이기가 시작되었고 총선의 정치 공작이 시작됐고 그래서 검찰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법사위원으로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BBK 문제만 하더라도 더 약한 말을 한 정봉주 의원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증적으로 얘기한 박근혜 의원은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성영 위원만 있지도 않은 사실, 동남아 여행, 출입국 관리만 확인했어도 이러한 일이 없을 건데 이렇게 적용될까, 또 어떻게 해서 모든 수사가 중단된 박연차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딸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가, 왜 BBK는 정봉주 의원은 감옥으로 가고 박근혜 위원장은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에 있는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은 주성영 위원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따님에 대한 기획수사 역시 공권력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중단하고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성영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과 함

께 그 남기신 마지막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짧게 발언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신상발언……

○박영선 위원 지금 주성영 위원의 신상발언을 죽 들었습니다. 주성영 위원에게 출석요구서가 나와 있는 이 사안은 작년에 중수부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매우 치열하게 논의됐을 때 그 당시에도 한 번 모 언론사가 이러한 사실을 기사화해서, 이미 지나간 사건을 기사화해서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매우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사개특위 위원들 검찰이 부당하게 내사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비판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출석요구서를 보니까 진정사건에 관해서 문의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저는 검찰의 수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그 어마어마한 7억 원이라는 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로 지금까지 검찰은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이미 무혐의가 됐고 또 작년 5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모 언론사가 언론플레이를 한 번 했었던 사건을 또 이런 식으로 익일특급을 통해서 출석요구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의 명백한 주성영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 개입이고 또 정치 공작의 냄새가 매우 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딸에 대한 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우윤근 법사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법사위 명의로 검찰에 공문을 좀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검찰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공문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내사나 수사 혹은 소환조사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발언을 하니까 또 하나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인데요, 오늘 의사일정 제46항에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상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저희 당에 이 법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그런 성명서가 하나 접수가 됐고요. 이 법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관계서류가 지금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 법안이 지난 10월 26일 날 있었던 선관위 DDoS 해킹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낸 서류가 죽 있는데 이것을 최구식 의원 공현민 비서가 죽 검토를 했습니다. 죽 검토를 했고 여기의 내용을 보면 현재 사감위에 면허권은 없다, 왜 그런가, 각 부처별로 기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법이 합법화되면 뛰어들 경쟁자들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사감위는 온라인도박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도박중독치유센터 건립 및 중독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참 갑갑하다,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몰라도 밀어붙여줄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내용들의 서류들이 죽 여기에 증거서류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DDoS 해킹 사건과 최구식 의원의 공현민 비서가 왜 이 법안을 검토를 이런 식으로 해야만 했는지 이것을 저희가 좀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춘석 위원 주성영 위원님의 가슴 아픈 사연 같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박선영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상득 의원, 최시중, 박희태, 박영준 차장 등 그래서 현안보고를 받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먼젓번 법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적으로는 오전에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오늘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차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모임에 참석해서 본인이 참석하기 어렵다, 차관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차관을 보내려고 그러면 저희가 안 받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에 의해도 9시 30분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도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금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만일 법무부장관이 18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고 차관이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 법사위를 저는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5일간의 일정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현안보고를 잡았을 때도 한 번도 사실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거부의사의 표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윤근 오늘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성영 위원과 관련해서 만일 이것이 선거 방해를 위한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법사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동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과연 정확한 증거를 갖고 실체가 있는 것을 수사하려고 소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어떤 방해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여야 간사 위원 분들과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현안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주성영 위원 신상발언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해 목적이 있다거나 또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하는 점을 한번은 현안질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위원들과 같이 오늘 중으로라도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이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오늘 법안심의 중에라도 제가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시급한 현안 문제를 질의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아마 12시까지 정개특위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처리된 법안이 넘어오면 여기서 검토를 해서 오후 1시에 저희들이 법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에 법사위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관 법률안은 해당 공무원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방송통신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G20 멕시코 출장 등 공식 행사와 위원장 공석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고 대리출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승인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최종원·김재윤·장병완·이석현·강창일·김영진·강기정·송민순·박은수·양승조 의원 발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3.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1항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와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 요약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법안들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개 조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잠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미루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최경희·이윤성·김태원·박보환·김소남·유정현·허천·임동규·김호연·이한성·신상진·정양석·황영철·유정복·최연희·이낙연·박기춘·원혜영·이춘석·김영진·안규백·전혜숙·김세연·정갑윤 의원 발의)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이은재·원유철·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무영·서상기·장광근·이윤석 의원 발의)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최경희·이은재·정미경·안효대·김성동·김성수·이정선·정해걸·정갑윤 의원 발의)
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전병헌·이찬열·남경필·권영길·안홍준·홍사덕·김용구·김상희·원혜영·정미경 의원 발의)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정수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송광호 의원 발의)
12.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53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의사일정 제7항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

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와 지형 변화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 해산됨에 따라 이 국제화재단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왔던 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이거나 장비·인력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1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정안은 퇴직 소방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에 의한 사실조사 분야인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정한 경우 필요적으로 민간조사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외에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법체계상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간조사업을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비업은 범죄와 피해 발생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유사작용의 영역이라 할 것이고, 민간조사업은 사건 발생 후 소재탐지와 사실관계의 조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수사유사작용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간조사업이 경비업의 한 영역으로 규율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이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 법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한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호를 나

누는 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대리인의 무인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두도록 하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를 일정한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허위 인적사항 사용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상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벌금형 상한액을 6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므로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1항에서는 통고처분의 부과를 재량에 맡기면서도 4항에서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통고처분을 다시 임의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부과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통고처분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어 안 제7조4항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 상세한 사항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정훈·포장의 수여대상에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인용조문을 추가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점 외에 체계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 시 두 법안이 병합심리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서 일부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청렴서약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 과징금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본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규정 등 체계를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3조는 2013년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것이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단순비교가 힘들다는 점, 국내 법령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조항이 약 320개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공무원법은 고졸 이상 졸업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귀화자와 북한 이탈주민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결격사유 중 금치

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는 2013년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공무원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앞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복장, 장비,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모범운전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한 후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지원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같은 이유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되어 계속 논의 중이므로 통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검토 결과,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이용섭·최종원·김재윤·장병완·이석현·강창일·김영진·강기정·송민순·박은수·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3.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5시03분)

○위원장 우윤근 대체토론에 앞서서 미뤘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우윤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장관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정치관계특위 법안이 있어서 이것 먼저 의결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상정에 앞서서 한 가지 긴급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부터 제108항까지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긴급한 사유를 감안하여 국회법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10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07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

108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의사일정 제10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7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 결과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21조제1항1호 단서에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행정비서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위원 잠깐, 위원장님! 106번부터 108항 검토보고서가 없는데요?

○위원장 우윤근 검토보고서를 배부를 안 했어요?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랑 한 장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우윤근 아니, 정치개혁특위 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지금 해서 긴급하게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본회의에 맨 먼저 이걸 넘겨 달라고 해서……

○박영선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뭐가 있어야 이것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우윤근 정치개혁특위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박영선 위원 아니 글쎄, 특위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위원장 우윤근 검토보고서를 좀더……

○박영선 위원 형식을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우윤근 아니, 검토보고서가 전부 다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세히 안 되어 있고?

○박영선 위원 이것을 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위원장 우윤근 지금 여기 법안 체계·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정책적인 부분은 정개특위안을 받아들인다 하는 내용으로……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보고서예요?

○위원장 우윤근 정당법은 여기 내용이 간단하게,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개정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구 획정……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법을 알고 통과시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위원장 우윤근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정당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에 공무원 중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고 또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범위 확대 또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에는 당비 및 후원금의 영수증을 납부 또는 기부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4시에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어서 정치관계법은 조속한 처리가 요망된다, 선거구 획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것……

○위원장 우윤근 질문, 이 법안 관련해서요?

○신지호 위원 예.

○위원장 우윤근 그러시지요. 질문 먼저 하시지요.

조금 검토하시지요, 지금.

○신지호 위원 아까 정개특위 회의 때 조금 주변이 어수선해 가지고 질문을 일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나 가지고 인터넷과 SNS 사전선거운동 허용한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개특위 선거법소위에서 많은 토의를 했는데 그때 같은 문자메시지인데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은 SNS니까 괜찮고 일반 전화 문자메시지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이제 선관위에서도 수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문자 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신지호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현행에는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5회에 한해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정보통신, 헌재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에 관해서 그것은 인터넷의 특성이 과거의 의사전달매체하고 다르다, 그다음에 인터넷은 공직선거법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상시 허용하는, 93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는 지금 카카오톡이나 다른, 이 법에 다른 관련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에서 말씀, 충분히 많이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다 허용하는 것으로, 다만 그것을 이용하면서 금품과 관련이 된다든지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제한, 금지되어야 될 것 같다……

○신지호 위원 저기 선거실장님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실장님. 우리 소위에서 같이 논의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선거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소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카카오톡, 대표적으로 모바일메신저인데 카카오톡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모바일메신저와 똑같이 문자메시지도 같이 허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현실에서 달라지는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모든 국민이 유권자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문자메시지를 가지고도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에만 선거운동을 못 하고 투표참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지호 위원 그다음에 대량 발송 5회 한정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그것은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지호 위원 그대로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예,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朴俊宣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근 박준선 위원님!

○朴俊宣 委員 이종우 사무총장님 정개특위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선거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폰이나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그 사이버공간에서는 없어졌다, 사전선거운동을 다 허용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도 허용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선거운동기간에'라는 그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내가 휴대폰도 없고 카카오톡도 못 한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는 노인네인데 내가 한 두어 달 전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우리 예비후보자 아무개나 또는 어떤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 그 사람 참 훌륭해서 그런 사람들 뽑아야 된다라고 노인정에서 한마디 했더니 그런 것은 처벌되고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은 되고, 이것 무엇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또는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이 불일치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전자우편 이런 부분은 허용되는데 그게 허용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비방이나 흑색선전 이런 부분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이 모든 것을 허용을 하되 그래도 그중에서는 주체적인 것,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내용 중에서 비방, 흑색선전이 이루어진다든지 방법상에서 금품을 기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朴俊宣 委員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SNS나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런 선거방법

을 허용하는 것에 비해서 현실세계에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의 오프라인에서, 생활공간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처벌하는 것은 매우 현격하게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온 국회를 둘러싸고 지금 남해·하동, 그다음에 구례·곡성 많은 국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국회에 의견 피력을 하고 정개특위도 매우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사무총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맨 처음에 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전체 선거구에 8개를 증설하고 그다음에 몇 개를 줄이는 것이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5개……

○朴俊宣 委員 5개를 통합한다, 통폐합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거기에는 파주, 용인기흥, 용인수지—용인수지 같은 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여주·이천, 수원권선, 강원 원주, 천안을, 기장군 그다음에 통합은 부산 남구갑을, 전남 여수갑을, 서울 성동갑을, 대구 달서갑을병, 서울 노원갑을병, 이게 통합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조차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선관위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선관위도 거기서 자료를 제공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지요.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선거구획정이나 이런 것이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밀실 야합이고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게리맨더링 할 수 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용인시의 인구가 90만이 넘어요. 우리 총장님 잘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朴俊宣 委員 안산은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의 안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구체적으로 지금……

○朴俊宣 委員 제가 알려드릴게요, 76만 명이에요. 용인시는 90만이 넘었어요.

안산은 지금 선거구가 몇 개입니까?

안산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입니다. 용인시는 90만이 넘었는데 3개이고 이번에 안산은 4개 유지하고 용인시는 3개 유지하는 걸로 지금 정개특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朴俊宣 委員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총장님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호남과 영남에서, 물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역대표성을 위해서 농촌이나 이런 것을 지켜 주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영남·호남 여기에서 여야간에 어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지방은 줄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정수는 국회의원은 인구의 대표이지 땅덩어리 대표가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원칙이 서 있다면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수긍할 텐데 원칙이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이 결과를 조금 전에 보고 기가 막히고 허탈합니다. 어떻게 용인시의 국회의원이 3명인데 안산은 4명으로 유지되고 분구나 합구로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유지되면서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갑을을 합쳐서 30만이 채 안 되는데 우리 용인시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37만인데 1개 유지하면서 옆으로 찢어 붙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역사적인 유래라든가 현재의 어떤 그런 지형적인 고려도 전혀 없이 그냥 지도만 보고 누군가가 얘기해 가지고 결국은 동백을 이리로 붙이고 마북을 이리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총장님이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참고적인 의견

만 제시한 거 압니다.

정개특위 위원, 여기에도 정개특위 위원이 계시고 저도 작년 여름부터 올 초까지 정개특위 위원으로 있다가 제 지역구가 분구 대상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회 18대 국회의원들의 상식과 양심을 믿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미래 희망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가지고, 토대로 여야가 정개특위에 관해서, 선거구에 관해서 많은 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고 그것이 여야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朴俊宣 委員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법 25조, 공직선거법 25조에서도 선거구의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게리맨더링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든 자치구든 편입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부산 기장갑을 등 17대 국회부터 그런 장난을 많이 해 왔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의원들의 야합이나 게리맨더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선거가, 선거구획정부터가 국회의원들의 야합의 소산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선거할 맛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 선거구는 하나로 유지되지만 선거구가 용인시 인구가 90만인데 당연히 한 4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를, 지역을 대표할 거라 했는데……

부산 남구갑을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30만밖에 안 되는데, 용인시는 3개 지역구 합쳐 가지고 90만이니까 각각 30만씩이에요. 그런 데가 3명이고 부산 남구갑을은 30만인데 2명이고, 부산은 대도시 아닙니까? 아까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농촌 대표성이라든가 결국 이런 것도 안 돼요. 안산 같은 것 보겠습니다.

안산도 경기 신도시입니다. 76만인데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경기 안산에 사는 국민이 시민이 용인시 기흥구나 처인구나 수지구에 사는 시민들보다 2표씩을 더 행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국민의 대표성인데 헌법에도 위반되고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고 현재 국민들 뜻 위반하고 결국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영호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만 지키기 위해서 이 야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에 우리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입법 과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분연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원칙적인 면에서 표명을 했어야지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지 이대로 법을 통과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恩宰 委員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개특위에 제가 들어가서 우리 여상규 의원님, 동료 의원의 몸부림을 치는 것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기흥구의, 사실 지금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제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수지 여기는 기흥 이렇게 넓은 데는 처인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98%에 해당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선거 인구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분구를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막 떼어다 붙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식입니까, 어느 나라 식, 도대체.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맨 처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부 구역 조정을 했는데 경계 조정을 한 내용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에 일부, 여기 중간에 있는 일부가 또 처인구로 붙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게리맨더링을 지금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의견 한번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이 국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대로 따랐을 뿐이다. 아니, 중앙선관위의 독자적인 의견도 없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오늘 법사위에서 사실 통과를 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총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다 선관위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있는데 선관위의 역할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선관위 위원들이 아는 지식도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그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입니다. 국회의 고유사무고요. 물론 선관위에서는 참여해서 필요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관위나 구·시·군위원회는 구·시·군에 있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법전에서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겪은 선관위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맨 처음에 갔다 그래서 이 예비후보자를 가지고 희롱한다든지 우롱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도대체 뭐 하는 기관입니까?

중앙선관위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번에 또 틀렸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의 상식입니까?

도대체 사무총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 그……

○李恩宰 委員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지역의 선관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경우는 법사위 와서 우리 사무총장님 뵐 수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예비후보자들은 이런 것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총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선거 관련……

○李恩宰 委員 어떠한 이유라도 이건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비후보들한테 물 먹이는 선관위원.

각성하시고요, 만약에 자꾸 그러시려면 자리 내놓고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부분은 위원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도……

○李恩宰 委員 어떠한 사례든지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적 신뢰와……

○李恩宰 委員 아니, 뭐가 노력하고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갖다가 받고 있는 선관위가……

○李恩宰 委員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李恩宰 委員 아니, 총장님!

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릴까요? 몇 가지 들어드릴까요? 구체적인 사람 이름까지 대 가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평소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李恩宰 委員 어떠한 이유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원들이 제대로 역할 안 하고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들 완전히 물먹이고 말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李恩宰 委員 꼭 찾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선관위원들을 해고를 시키든지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위원님, 저……

○李恩宰 委員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가지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지금 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여다보니까요, 합의 안 된 부분이 한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양당 간사한테 다 확인을 했습니다.

"후보자비방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이것이 정봉주법과 관련해서 선관위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쟁이 붙었던 부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이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주요 내용 1, 2, 3, 4번에,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의 4항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항을 들어내고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거 들어내는 데는 정개특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원안 유지하자는 얘기지요?

○박영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건……

○박영선 위원 이게 나중에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 공직선거법 마지막 회의 소위를 들어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됐는데 이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끼워 넣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정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형에 관한 건데요, 상향된 것을 원안으로 하자는 건데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도 있고 하니 그것을 풀되 그 대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가혹하게 묻자 하는 논의가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있었고……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박영선 위원께서는 나중에 사보임 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 전에 있던 조경태 의원님이라든가 또 백원우 의원님이라든가 또 정장선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여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공감했던 바인데 제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정개특위가 방금 전에, 한 30분 전에 열려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장 우윤근 지금 여야 간사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상향 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여야 정개특위에서도 원안대로 유지해도 좋다 그런 의견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 제가 마지막 회의를 못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관계를, 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위의 3항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의 게시판에……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것은 맞는데 그 다음 조항은 합의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란을 하다가 그냥 회의가 해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근 우리 여야 간사들이 원안유지로……

○이춘석 위원 예.

○위원장 우윤근 예.

그러시면 아까 사무총장께서는, 박준선 위원이나 이은재 위원 말씀을 저도 위원장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된 사항이니까 존중하지만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나 지역구민들은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그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거를 불과 두 달도 채 못 남았는데……

뭐 그런 상황은 선관위에서, 물론 우리 정치 여야 위원들이 그 점은 신중히 판단해서 조속하게 선거구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

는 하여튼 그런 점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우윤근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민주통합당 박지원입니다.

헌재의 위헌판결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나라는 단원제 아닙니까? 양원제의 경우는 지역과 인구를 감안하지만 단원제에서는 이것을 혼합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앞으로 농어촌 문제는 굉장히 큰, 특히 분단국가에서 식량 같은 것은 안보에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모두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시키고 도시 중심의 개발로 인해서 농어촌이 자꾸 피폐돼 가고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볼 때 꼭 모든 도시는 증구를 하고 농어촌 구역은 자꾸 축소해 나간다고 하면 거기는 누가 대변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양원제로 되든지 단원제의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구와 지역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해방 당시에 호남 영남의 인구 차이는 약 20만밖에 영남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남은 67석이고 호남은 31석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부족하면 영남의 3석이 기준이 된다면 거기 3석하고 호남도 없애야지 어떻게 그런 데는 또 균형감각을 가져서 영남 하나, 호남 하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요. 앞으로 농어촌은 어떻게 할 거예요? 4년 있다 또 줄일 거예요? 분명히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서 선관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국회의 입법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저는 민주통합당의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입니다. 어떻게 담양 구례 곡성, 몇 번씩 바뀌어 가지고 담양은 또 이쪽으로 붙이고 구례는 저쪽이고 곡성은 저 건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러한 농촌 군들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남에 부족하면 왜 거기는 살려요? 인구수로 보더라도 거기가 셋이 줄고, 호남을 줄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선관위에서 어떻게 그런 균형감각은 그렇게 잘 만들어 내십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총장님 답변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 안은 선관위가 안을 내어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선거구 획정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 직무가 아니고, 국회의 고유사무고 입법재량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모든 것을 참고로 하는데 선관위도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지요.

그렇다면 계속 농어촌지역이 이렇게 됐을 때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할 때 선관위가 그런 균형감각을 좀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점진적으로 내놔야지 무조건 300석 맞추려고 말이지요, 영호남 균형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과 박지원 위원은 반대의견이 있으신데 소수의견으로 저희들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10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제251조를 수정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0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선 위원 후보자 비방죄 들어와 있는 것을 들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251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朴俊宣 委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국민대표성이나 표의 등가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원천적으로 밀실 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명백히 반대입장을 표시합니다.

지금 다른 중요한 규정들, 재외선거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제가 결사저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106항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박지원 위원님도 반대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우윤근 두 분의 반대의견을……

○李恩宰 委員 저도 반대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이은재 위원, 세 분의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이의가 없으면,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6.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최경희·이윤성·김태원·박보환·김소남·유정현·허천·임동규·김호연·이한성·신상진·정양석·황영철·유정복·최연희·이낙연·박기춘·원혜영·이춘석·김영진·안규백·전혜숙·김세연·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이은재·원유철·권경석·장제원·유정현·이무영·서상기·장광근·이윤석 의원 발의)(계속)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김소남·최경희·이은재·정미경·안효대·김성동·김성수·이정선·정해걸·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9.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김충조·최인기·홍재형·김유정·강기정·김영진·손범규·안규백·전현희·김우남·신학용·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1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전병헌·이찬열·남경필·권영길·안홍준·홍사덕·김용구·김상희·원혜영·정미경 의원 발의)(계속)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정수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송광호 의원 발의)(계속)
12.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0.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시40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2항까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지호 위원님!

○신지호 위원 경비업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 김기용 예.

○신지호 위원 이게 제가 행안위 법안소위에 있을 때도 법안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심사보고에도 나왔지만 법안 명칭이라든가 법체계상 이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데요.

민간조사원 하면 생소한 언어라서 잘 모르고 우리 그냥 가장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립탐정 정도 되겠지요. 사립탐정을 합법화시키자, 이제까지는 심부름센터에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이것저것 뒤를 캐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민간조사원 해 가지고 일종의 그것을 양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탐정업인데 이것을 경비업법에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습니까?

경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이런 것도 있듯이 무슨 법이나 법안, 법률 명칭이 딱 들었을 때 어떤 건지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탐정업하고 경비업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다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견강부회라고 할까요, 억지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경찰청차장 김기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이라는 명칭이 일견 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경비업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방활동인 민간경비하고 민간조사를 상호 융합해 가지고 하나의 법체계로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민간조사업을 어떤 경비업의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일부 주만 빼놓고는 경비업을 갖다가 민간조사업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런데 경비라는 그 어원상의 의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엇을 막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외부의 부당한 침입이라든가 누가 부당하게 해코지 해 왔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막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김기용 그렇습니다.

○신지호 위원 그런데 민간조사라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경비업의 확장 개념으로서 탐정 업무를 그 안의 한 부분집합으로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건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률이라는 게 알기 쉬워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탐정업도 경비업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 김기용 하여튼 뉘앙스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실제……

○신지호 위원 굳이 별도의 법으로 하지 않고 꼭 경비업법에 넣어서 하려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으로 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김기용 물론 별도의 법으로……

○신지호 위원 예를 들자면 민간조사업법……

우리 전문위원,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요?

민간조사업법이라는 게 지금 발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랑 같이 해서 거기서 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김기용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또 학계에서도 민간경비를 하는 일과 민간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일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테두리 내로 묶어서 하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법에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민간조사업법이라는 게 별도로 발의돼 있다니까 거기서 병합 심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잠시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겠습니다.

이두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두아 위원 경찰청 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지호 위원님께서 경비업법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요, 지금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하나로 신설을 하는 게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민간조사업이 일정 부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합법화돼서 어떻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인권 침해 요소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법 규정의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법체계의 정합성이라든가 법률 간에 상충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유법안으로 민간조사업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계속 법사위원들이 중복되는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고유법안으로 강성천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조사업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521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하고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왜냐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사를 의뢰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조사업법안이 발의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하고 경비업법 안에도 이 호가 신설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고유법안하고 그다음에 이 경비업법하고 병합 심의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고 그런데요, 신지호 위원님 의견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찰청차장 김기용 병합해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제기되어 있는 법률이 법무부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한다는 그런 기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조사가 개인이 어떤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고 이것은 사적인 안전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비업 관리 감독 업무를 기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하는 게 좋고, 또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비업의 큰 바운더리 내에 민간조사업을 포괄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안에 넣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병합 심의하는 데 대해서도 따로 반대는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병합 심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고유법안이고 또 경비업법은 행안위에서 통과되어 왔겠지요.

그런데 행안위에서 통과되어 온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업이랑 민간조사업의 관할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행안위 의견도 들어볼 수밖에 없고요.

또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법사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이 법이 통과하고 나서도 민간조사업법이 법사위 내부에서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또 통과가 되고 할 때 법률 간의 상충 가능성이라든가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가 안 될 것을 우려를 하는 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 요소가 되도록이면 적게 들어가서 바람직하게 입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요.

저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은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병합 심리를 하거나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한번 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김학재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고요.

○김학재 위원 이두아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병합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민간조사업법이 1소위에 가 있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업법안과 병합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9항, 그리고 제1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영선 위원 8항은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질의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풍속영업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가운데 특히 목욕장업만 풍속영업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김기용 이것은 무슨 근거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자구가 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선 위원 여기 주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목욕장업만 이렇게 규제를 할 경우에 숙박업이나 이용업 같은 경우에 규율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박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풍속영업에 속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에서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숙박업과 이용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규율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행안부장관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장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마 목욕장업을 특별히 따로 규정해서 분류하는 이유가 목욕탕을 보면 터키탕도 있을 수 있고 풍속을 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분류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박 위원님, 장관님 답변……

○박영선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여기의 검토의견은 이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규율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구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저도 이 자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검토 내용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경찰청차장 김기용 지금 보시면 자구가 풍속업의 범위를 숙박업, 목욕장업과 이용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목욕장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상용 전문위원, 박영선 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그래서 이용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장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에 터키탕 같은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면 목욕장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일반 선의의 목욕장은 상관이 없는데요, 목욕탕을 보면 그런 이상한 데가 많거든요.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의의 목욕장인지 뭐 어쩐지 하여튼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 법 자체가.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게 그렇게 시급한 법이 아니면 4월 말에 또 다시 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을게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그 체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위원장 우윤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청차장 김기용 아니, 조금만 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용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목욕장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따로 그것만 분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용업하고 또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목욕장업만 따로 떼어서 2항으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김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면 해석이 분분한 거지요. 이게 더 강화하는 것인지……

○위원장 우윤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법안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켜 놓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길게, 이해시키기가, 설득이 쉽지 않아요.

○경찰청차장 김기용 아니,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닌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박영선 위원님, 전문위원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박영선 위원 다음번에 해도 상관없겠어요, 이것은.

○위원장 우윤근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다음번 4월 말, 5월 초에 국회가 한 번 더 열릴 때 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7항, 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朴俊宣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근 예, 박준선 위원님, 잠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발언하시지요.

○朴俊宣 委員 조금 전에 우리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좀 못마땅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결을 한 가운데, 의결을 했지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번안 의결을 하든가 아니면 체계·자구 수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정개특위에서 워낙 졸속으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용인의 경우에는 지금 일부 행정구역에서 다른 지역 선거구로 편입되는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용인시 기흥구 또는 수지구, 처인구가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신도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가나 지역의 자존심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지금 동백동과 마곡동을 일부 떼어서 처인구로 붙이고 그다음에 수지구에서 일부 상현2동을 떼어서 기흥구로 붙이고 처인구는 기흥구에서 일부를 떼어서 붙여서 선거구로 해서 독립 선거구로 하는데 지금 선거구의 명칭이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선거구로 돼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선거구의 경우에는 용인시 일부 처인구와 일부 기흥구가 붙기 때문에 '용인시갑' 그다음에 기흥구의 경우에는 기흥구의 일부와 수지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을 예정하지 않는 한은 '용인시을' 그다음에 수지는 '용인시병'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천안시의 경우에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을 동남구로 붙이는데 지금 천안시 그 선거구 명칭도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구역이 다른데. 역시 천안시도 동남구나 이것은 갑, 서북구 쪽은 을, 그래서 '천안시갑·을' 선거구로 되어야 됩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도 현재 선거구 4개 중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권선구를 갖다가,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일부 동을 팔달구로 붙이면서 권선구, 팔달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원시갑·을·병·정', 4개 선거구의 명칭이 전부 달라져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번안 의결 또는 자구수정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본회의를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번안 의결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절차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한 결과 지금 명칭이 상호 불일치하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불일치하는 관계로 체계·자구상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선관위가 갑·을 이렇게 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네요.

용인하고 천안은 실제로 이번에 편입되는 관계로 행정구역하고 선거구 이름이 불일치하므로 이게 체계·자구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들하고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번안 의결은 굉장히,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선관위에 확인했더니 충분히, 갑·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편입되는 바람에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체계·자구 정리를 해서 선관위하고 협의하도록,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 여야 간사님들 양해해 주시면……

○朴俊宣 委員 예.

○위원장 우윤근 예, 수원도 상의를, 그렇게 해서 선관위도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제6항, 제9항, 제1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와 제2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우윤근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선 위원 15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나요?

○위원장 우윤근 예, 15항, 말씀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지금 31조2항 그리고 31조4항과 관련해서 국가계약법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국가계약법하고 함께 심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있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거나 일정한 경우에 입찰 참가를 허용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국가계약법에서 동일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서 지금 현재 이게 계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계류를 시켜서 같은 사항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 지방계약법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각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이리로 왔고 거기에 또 우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행안위에서 이 법이 이렇게 넘어 왔는데 그것이 보류돼 있는 게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경미한 부정당업자의 경우에 입찰 참가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과도한 피해가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의 90% 이상이 전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급하게 처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하고 국가계약법은 적용 기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꼭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좀 갖습니다. 그 대목이 있고요.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업 내에서도 서로 찬성과 반대가 있는 법안이네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데 이게 대체로 찬성을 하는 법안들이고 굉장히 환영하는 법안들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건설업체 봐주기 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럴 일은 없고요. 그게 중소기업을 봐주는 거고요.

○박영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국가계약법이 2소위에 넘어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방계약법하고 국가계약법이, 하나는 지금 소위에 넘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같이 넘겨서……

○박영선 위원 아니, '굳이'는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설업체에 대해서, 물론 건설 경기를 하는 분들은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바라겠지요.

그런데 이게 건설업체 봐주기 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가계약법이 그런 문제로, 똑같은 조항을 사유로 해서 지금 2소위에 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 부분이 그러시다면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빼더라도……

○박영선 위원 아니, 그리고 특히 MB 정권 들어와서 건설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신

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앞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뒷부분을 위원님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 이것은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빼도 좋은데, 현재 시·도의 경우 284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까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전문위원께서도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밑의 것은 그냥……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이 폐기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2소위로 보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우윤근 장관님, 하여튼 4월 국회를 한번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한번 보지요, 같이.

○박영선 위원 이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러니까 이 조항만, 저희들이 삭제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박영선 위원 아니요, 그 조항,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항도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같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이 동일한 사안인데 이것은 통과시키고 또 그것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요, 국가계약법의 그 부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을 국가계약법에서도 꼭 문제가 되면……

○박영선 위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 때문에……

○박영선 위원 제가요, 장관님 하시는 일에 지금까지 반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건설업계 이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설업계하고는 상관없고요, 지방……

○박영선 위원 우선 행안부는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방에 있는…… 요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소기업,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이 사람들의 다수의, 말하자면 규제를 해제시켜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박영선 위원 아니, 글쎄 그 말씀은 좋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박영선 위원 어려우신 것도 다 알고, 압니다.

그러나 이 정권 4년 동안에 4대강 공사 등등으로 인해 갖고 건설업과 관련된 각종 민원과 비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법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그런 어떤 이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협회 내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특별한 이견은 저는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잠깐, 지금 선관위 관계자가 와 계세요?

조금 전에 선거 관련법은 우리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서 갑·을·병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그리고 제16항~제18항까지 그리고 2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1항과 제2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김장수·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2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박상천 의원 대표발의)(박상천·안규백·이진삼·김학송·문학진·김옥이·송영선·신학용·서종표·원유철·정미경·심대평·정세균 의원 발의)

(16시09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전상수 의사일정 제2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군 의과·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장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정년규정이 미비하므로 재임용 심사제도의 도입 취지가 반영되도록 재임용 탈락자에 대하여는 안 제8조제1항의 현역정년을 적용토록 하여 법적 공백을 보충하는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군인 등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선 위원 지금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상정했나요?

○위원장 우윤근 지금 23항, 24항 국방위원회 관련 법안입니다.

○박지원 위원 국방부장관께 하나 여쭤 봅시다.

○위원장 우윤근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우리 국방장관님 트위터에 보니까 국방개혁법안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셨데요, 트위터에 올리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개혁법에 대해서는 제가……

○박지원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뭐지요? 국방부 법안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

○박지원 위원 요즘 나꼼수, '나는 꼼수다' 그 방송을 군 내부에서 사병들한테 차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군 내부의 군사적 문제 또는 안보적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복무규율상에 직속상관을…… 우리는 명령과 복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통수권자를 과도히 비방하는 행위를 장병들이 보고, 이건 좀 정신전력에 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조치한 건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부대에서 지휘관들이 하는 지휘권 행사이니만큼 인정을 한다……

○박지원 위원 물론 군인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꼼수는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까지 1000만 이상이 듣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 사병들에게 그러한 것을 차단시키는 것은 알 권리를 차단하는 거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고 또 사병들도 그러한 현실을 판단해서 능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일인데, '이건 국방부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정치적 간섭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견해를 밝히시는 분이 있는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앱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또 남북 대치 간에 있는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할 적에 결코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각급 지휘관들이 지휘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큰 간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간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간여를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정당한 조치다 저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은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휘관들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고 국방장관으로서 그것은 정당한 조치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장관으로서는 정확히 이것을 지워라, 없애라 이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맨 먼저 시작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이 우리 예하부대의 어느 군단과 정비창 거기에서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시작하니까 전군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군으로 확산되었다 어쨌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현저하게 군통수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파악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것이 낫지, 국방부장관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가 언론을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일어났던 이 부대에 대한 지휘관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장관으로서 평가를 해 줬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다른 지휘관은 그것을 보게, 듣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은 거기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가 길게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지휘관이, 일부러 그것을 허락하는 지휘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위원 허락하지 않더라도 보면,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방부장관 김관진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부대 내에서 이게 횡행하게 되면 결국 정신전력에 이롭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못 하게 한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결과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지휘관이 자율적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는 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시행했던……

○박지원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장관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휘관들에게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떳떳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그것이 더 문제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 문제가 군 전반에, 소수 문제로 이제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만일 이 문제가 군 전반을 뒤흔드는 큰 문제 같으면 분명히 저는 금지를 지시할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 종북앱으로 규정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종북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나꼼수를 종북이라고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육군군수사령부 등에서 그렇게……

○국방부장관 김관진 거기는 종북앱은 따로 있고 나꼼수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그런 균형을 잡고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심재철·김용태·권택기·정태근·정두언·한기호·장광근·이용섭·신건·김동철·이사철·임영호·이진복·현기환 의원 발의)
28.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장 제출)

(16시19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 나오셔서 제28항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 許泰烈**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무위원장 허태열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동 법안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설명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안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해 주실 것을 우선 앙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에 서울과 부산, 대전, 전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18개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서 무려 약 7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의 약 75%가 60세 이상의 고령이고, 월평균소득이 10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분들이 5000만 원이 넘은 액수만 하더라도 불과 7000만 원까지, 불과 2000만 원 정도 오버된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약 84%에 이르고 있는 아주 영세한 대상자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경영상의 잘못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제1금융권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PF를 영세한 저축은행에게 허용을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으로 부실을 키워 왔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회와 감사원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빗발치게 지적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치하거나 은폐하였는가 하면 부실이 확인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고 이를 지연해 온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을 상시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의 임직원들이 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낙하산 취업을 해서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은폐하고 조장, 방조함으로써 순박한 예금자들은 정부의 감독 권능을 믿어 가지고 의심치 않고 예금을 맡김으로써 부실의 피해를 고스

란히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우리 국회나 감사원이나 관계기관의 경고를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면 부실화된 저축은행은 18개가 아니라 소수에 그쳤을 것이고, 그만큼 피해자 수도 적게 되어서 오늘 이런 특단의 특별법 제정까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오류와 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화에 커다란 원인이 되었음은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졌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도 부실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도 국회 속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 사건이 터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 오류와 관리·감독의 실패를 줄창 지적해 왔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책임 부분 만큼을 보전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저희 정무위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감독으로 인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 정도인 것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가 전국에 걸쳐 7만 2000명이나 되고, 또한 이들 피해자가 전국으로 퍼져 있어서 건별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 재판이 끝나려면 최소한 4~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이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에 학력이 낮고, 영세하기 짝이 없는 생활수준에 비춰볼 때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는 형편에서 4~5년이 걸리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서 배상금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은 이들 7만 2000명의 영세한 이 피해자들을 마치 죽음으로 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판단도 저희들은 같이 가졌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많은 입법례들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한 입법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무위원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와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수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해서 오늘 법사위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부실저축은행 예금자 중 5000만 원 이상 초과 예금자들에 한해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의 부실로 인해 입은 피해액의 55% 정도까지 파산배당금을 포함해서 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치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규모와 연령, 학력,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산배당금과 정부 보상금의 합이 피해 채권액의 55%까지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보상기금의 재원은 부실저축은행이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서 과오납한 법인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과 부실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감독분담금 및 민간의 출연금 등으로 우선 조성하되 보상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일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추산에 의하면 7만 2000명의 이 피맺힌 이들의 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은 불과 10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추산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저지른 중대한 잘못을 감추고 싶은 정부의 자기방어를 위한 구차하고 지극히 무책임한 변명 논리와 이에 근거한 일부 언론의 오해와 이해 부족에서 대부분 비롯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부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금융상품 선택의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고, 5000만 원 이하 예금의 보호제도를 허물어뜨림으로써 금융거래의 기본질서가 훼손될 수 있

다는 우려를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예금보호제도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이 법은 정부의 정책 부실과 관리·감독의 실패로 인해 입은 선의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책임만큼 피해액을 보상해 주라는 법이지 예금보호한도를 5000+α로 해서 확대하라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1997년 외한위기 사태에서도 없었던 후순위채까지 보상하는 법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동 법 어디에도 후순위채를 보상한다는 규정은 한 줄도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에 한해서는 일반예금과 같이 정부의 책임만큼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다른, 지금 오늘 현재도 다른 예금상품에도 일반적으로 상시 적용되는 예금자 구제제도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의의 예금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저희들은 달게 받습니다.

사실 정부가 잘못한 정책 때문에, 관리·감독 때문에 보상을 한다면 정부의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정도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실저축은행의 절대 다수 피해자들의 절박한 생활고를 감안할 적에 보상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금년도 예산은 한 푼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정무위원회가, 이 부실저축은행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이들 불쌍한 피해자들은 또 1년을 더 허송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일부를 우선 차용해서 쓰고, 이 부족한 예산은 정부도 지금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활용해서 내년 예산에 여기에서 일시 차용하여 쓴 돈을 채워 넣으면, 1000억 정도를 채워 넣으면 선의의 피해자도 없고, 또 피해자들은 당장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한 것이지 어떤 위헌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보상대상을 2008년 9월 1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부실화된 저축은행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급입법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 다른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 12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여파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PF대출 등의 부실화가 충분히 예견되어서 국회나 감사원에서 이미 빨리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당겨라, 정말 빗발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을 수정하고 즉각적으로 보완하지를 못하고 무책임한 감독 행태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오늘 18개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무위원회는 이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충분히 예견된 그 시점에서부터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지도 않고 감독 행태도 바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 18개 은행을 저희들은 동 법의 적용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소급입법은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저희들은 크게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향후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영세한 저축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PF거래도 이미 정부가 취소를 시켰고, 또 부실감독의 대명사였던 금감원 직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저축은행의 감사로 내려가는 일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 일로 책임질 일이 저는 다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설사 예금자들이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충분히 이제 5000만 원 넘으면 예금 보호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이 그것을 분할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예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

면 그야말로 예금자 본인이 자기부담책임으로 5000만 원 이하만 보호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염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줄여주시지요. 이제 취지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법안이 한 100개 됩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政務委員長 許泰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무위원들은 동법 처리를 둘러싸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무위원들이 동법 처리로 인해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선거를 위해서 의식했다면 이 법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분에 충실한 정말 표를 염두에 두지 않는 용기 있는 입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아픔과 함께 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감독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그 책임 부분만큼 신속히 보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특별조치법을 꼭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긴 제안설명을 들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요약본 유인물 2쪽입니다.

의사일정 25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7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0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29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먼저 경제적 약자인 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헌법상 경제적 기본권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권고조항 정비 등 7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법안들입니다.

의사일정 31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개 조항, 의사일정 32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개 조항, 의사일정 34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39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8항은 양해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제정 취지가 국회의 입법정책 기조에 어긋나고 주요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먼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의 발생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제정법안은 이러한 국회의 입법정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첫째, 은행과 예금자 간의 사적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는 금융의 안정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상품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이후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소급하여 보상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평가되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보상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목적에 반하고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예금자 등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법안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조세 관련 법률에서만 규정해야 하므로 법인세 환급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 모두 25개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어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恩宰 委員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감독 당국의 감독 문제도 있지만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과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있을 텐데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할 때마다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요. 이것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이런 커다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금융위하고 관련된 건데 여전법도 금융위 관계이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委員 이것을 보니까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먼저 위원님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축은행 관련 특별법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8년 9월 12일 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이미 13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 시행 후에 만약에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등 원칙의 침해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 보상이 특별계정으로 지원이 되게 되는데 그 특별계정 설치 목적이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 목적과도 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보기금에서 부담하는 보상 재원액만큼 결국은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이 추가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서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더 큰 본원적인 이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금융권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금융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 원칙에도 반하고 예보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걱정이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특히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런 특별법 논란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면 저희가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

○李恩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희가 지금 정부로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그동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추진을 하면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들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쟁 조정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를 하고 있고 지금 후순위 채권매입자 1540명 중에 일부 소송 제기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1402명에 대해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5000만원 이상 저축예금자와 동일하게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파산재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주주 등 부실 관련자로부터 재산 환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산재단 배당금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조치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공정한 책정이라든지 부당한 차별 금지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로서도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또 금융회사들이 강제로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게 되고 심지어 영업자유의 원칙을 규율하고 정하고 있는 헌법과도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더더구나 정부로서 이런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 집행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정하든지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는 심각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허태열 위원장님!

제가 법사위 4년째인데 최장시간의 제안설명을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政務委員長 許泰烈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저도 부산저축은행이나 삼화저축은행이나 저희 지역구인 보해저축은행 피해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특히 검찰 수사가 지금도 왜 이철수는 못 잡고 있는가, 안 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도 자꾸 확인을 하면 곧 잡는다 하는 게 지금 2년이 돼갑니다.

허태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금감원, 즉 이 정부의 잘못은 명명백백합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퓰리즘이다, 모럴해저드다, 총선용이다 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政務委員長 許泰烈 ……

○박지원 위원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모르세요?

○政務委員長 許泰烈 제게 물으시는 겁니까?

○박지원 위원 예.

○政務委員長 許泰烈 글쎄요, 표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언론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제공하는 것은 역시 정부 측 아니겠나 하는 느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정무위원장이고 그렇게 관심이 크시면서 그렇게 집권여당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이것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관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금융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포퓰리즘이고 모럴해저드이고 총선용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집권여당의 국회의 상임위원장이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집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 지금 이것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하는 것 안 보셨어요?

○政務委員長 許泰烈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 여당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이것 모두가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되겠어요?

금융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포퓰리즘, 모럴해저드, 총선용, 정부의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희는 그런 포퓰리즘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금융질서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됐을 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뭐 그 전제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박지원 위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시잖아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국민은…… 우리 야당은 뭘 보고 통과를 시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비대위원장 저한테도 수십 번 전화 오고 지금 문자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얘기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매도가 되어야 됩니까? 정부에 잘못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이렇게 거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야당에다 던져 놓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저 부산 새누리당 의원들, 우리 김무성 전 대표 와서 꼭 통과시켜 달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집권할 자격이 없어요. 정부인지 여당인지 나는 분간이 안 돼요. 이것 통과되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일반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포퓰리즘이다, 모럴해저드다, 총선용이다, 또 정치권이 매도되어야 됩니까?

정무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政務委員長 許泰烈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잘못이 없었으면 애초부터 이 법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피해자가 전국에 7만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예 큰 사회문제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저희들 자료를 보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5000만 원에서 겨우 1000만 원 넘는 피해자가 무려 85.1%입니다. 7000만 원 되신 분이 또 7.1%니까 이것만 해도 90%가 넘습니다. 흔히들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 예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을 그게 왜 서민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고령자로서 퇴직금 받아 가지고 저축은행에서 한 푼이라도 이자 더 받아서 그것을 생계로 이어가는 분들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政務委員長 許泰烈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政務委員長 許泰烈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당시…… 정부 관계자들도 국회에 수차 와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이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내놓아라, 그러나 정부는 내지 않습니다. 그 법을 만들려면, 이것이 금융질서를 위반, 뭐가 금융질서가 위반되느냐……

○박지원 위원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사위에서는 검찰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울산지검에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잘못한 것 이런 것을 따지더라도 검찰에서나 법무부장관은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다', 이것이 정부 태도입니다. 그때 만약에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했을 때 부산저축은행의 오너나 간부급들을 처벌했으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 법사위에 야당에게 정부 여당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관은 못 한다 하고 청와대 대통령은 더 큰소리치고, 이것이 새누리당의 자세가 되냐 이겁니다. 정부의 자세가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이고 저도 매도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정부 여당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확실한 정부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이번만은 어떻게 한다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춘석 위원 이 주관 부서가 금융위원회입니

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금융위원회입니다.

○이춘석 위원 이 부실저축은행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18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는데 5000만 원 초과 예금자하고 후순위채 투자자가 8만 2400명입니다.

○이춘석 위원 8만 2400명이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이춘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어서 보상을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지금 법안대로 55%까지 보상을 한다고 전제한다면 6만 3000명에 약 1025억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6만 8000명……

지금 부실저축은행이 몇 개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대상 18개 저축은행입니다.

○이춘석 위원 그중에서 몇 개만 할 수 있습니까? 몇 개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55%까지 보상한다고 그러면 11개 저축은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11개 대상 기관?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이춘석 위원 지금 법명이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들 피해를 다 보상받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위원장 말씀에 의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상을 받게 되고 일정 사람은 보상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피해자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 부류 중에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에도 형평성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저의 지역구는 전라북도인데, 전북 익산인데 전일상호저축은행하고 전주상호신용금고가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주저축은행은 저희 추산에 의하면 제외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전일상호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일도 제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사무실에 피해자들이 700명이 찾아왔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 보상을 받는데요. 저보고 앞장서서 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 불렀습니다. '해당 사항 있느냐?',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보상받는 줄 압니다. 이것 도대체 누가 사기 쳐먹는 겁니까?

이 법 통과됐는데 실제로 보상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받는 것 없는 사람이 있으면…… 법명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라 다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것이다, 보상받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보상받고 일부 지역은 보상 못 받습니다. 이것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다 보상하든가 보상하지 못하면 다 하지 않든가 이것이 법적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또 피해자들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가 전부 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개 저축은행 중에 7개사는 사실상 이번 특별법이 작동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은 받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형태로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파산재단에서 55% 이상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보상이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라도?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부실저축은행 피해자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한도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적으로는 어느, 어느, 어디는

받고 어디, 어디는 못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 줘야지 마치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전원이 이 법이 통과되면 다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두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두아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원장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안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태열 정무위원장님이 아까 제안설명 하셨는데요, 수석전문위원과 금융위원장의 답변에서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금융위원장 말씀을 들어 보면 특별조치법안은 적용 대상을 2008년 9월 12일 이후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호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래서 2008년 9월 12일 이전이나 법 시행 후 발생한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법 시행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금융위원장의 답변 과정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는 이 부분이 검토가 됐을 수도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이것을 생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政務委員長 許泰烈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 이렇게 방만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랬으면 특별법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배상법 해 가지고 가면 되지요.

두 번째는 이 피해자들이 아주 영세한 우리 사회의 정말 어려운 대상자들입니다. 흔히 5000만 원 이상이면 엄청난 돈을 예치한 것 같지만 제가 갖고 있는 통계표를 보면 5000만 원에서 불과 1000만 원 정도 오버된,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으니까, 85.1%가 6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법 적용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1000만 원의 55%면 550만 원 받아 가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1년을 노숙하면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억이 넘는 사람은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의 특수성, 우리 사회의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피눈물이고, 이것을 정부가 그러면 자기들 책임만큼 무슨 규정을 만들든지 정부가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금융 논리만 내세우고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정무위의 여야가 합동으로 만든 법입니다. 1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 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정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국회는 한 사람도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회의 기본적인 본분, 이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금융 근간을…… 뭐를 금융 근간을 흔드는지 저희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5000만 원 예금보호 한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뭐가 금융 근간을 흔듭니까? 그런데 자꾸 금융위원장은 금융 근간을 흔든다는 막연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언론도 그렇게 쓰고 국민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5000만 원 이하는 전혀 손 안 댑니다. 이분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만큼 보상을 하라는 것이 이 법이지 예금 마음대로 올려 주라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7만 3000명, 아까 후순위채 합치면 8만 2000명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모르겠다, 재판 걸고 오시오' 그러면 생활 수준이 어렵고 학력 수준이 낮으시고 다 70대, 연령이 높으신 분이 4, 5년이 걸리는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발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그 충정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아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장께 질의를 또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바

와 같이 2008년 9월 12일 이전이나 법 시행 후 발생한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정무위원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일정 부분 정부에, 금융감독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순위채권도 신고를 받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재산 확보는 주로 검찰에서 노력해서 예금보험공사에다 알려 준 거고요, 그 노력 말고 실제로 그러면 개개의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져서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김석동 우선 이번에 이 법에 반영돼 있는 전제로 계산을 해 보면 5000만 원까지는 저희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 55%를 보장하게 되면 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이 148만 원입니다. 148만 원이고, 그러니까 초과 예금이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대단히 낮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피해자 구제대책을 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저희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 전체 1500명 중에 1400명을 구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정도로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산배당 극대화를 위해서 검찰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금보험공사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건에서는 여러 가지 부실 관련자 소유 재산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파산배당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122개 부산저축은행 SPC 대출 채권에 대해서도 그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수자산 TFT를 지금 20명으로 편성을 해서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시기적으로 빠른 파산배당을 못 받을 것을 우려를 해서 저희가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우선 개산지급금으로 먼저 그 돈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장, 박준선 간사와 사회교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부로서는 그동안 도의적으로 저희가 유감스럽고 또 송구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항상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 여론 그리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선거나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에 의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별도의 보상책은 저희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두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俊宣 이두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금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저한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 위원님, 이 법 통과 막아 주십시오.’ 저축은행법과 관련된 얘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통합당에게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는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야당이 소중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관련 각종 법들과 관련해서 정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도를 걸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하면 민주통합당 찾고, 청와대가 오더 때리면 그냥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왜곡시켰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이 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고 금융질서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말이.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는 왜 2008년도 5월 달부터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을 지금까지 숨겨온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뭡니까? 정부는 나와서 안 된다 그러고 새누리당 위원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마치 무슨 서민을 위하는 전도사인양 발언하시고, 연설하시고…… 저는 이것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선 간사, 우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합의해 가지고 오십시오. 더 이상 민주통합당을 꽃놀이패로 만드시지 마시고요. 대통령이 뭐 잘한 게 있으시다고 무슨 이 법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큰소리를 칠 수 있나요?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새누리당이 어땠습니까? 무슨 캄보디아니 뭐니 거론하면서 이것을 노무현 정권이 한 것처럼 뒤집어씌우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합수단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구속된 사람들, 돈 받아 갖고 구속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누구인가요? 누가 돈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민들을 울렸습니까?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결국 서민들은 돈 못 찾고 이 세상에서 좀 방귀 꽤나 뀐다는 사람들은 돈 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왜 그럴 때는 새누리당에서는 나서지 않고 이제 와 가지고 선거가 임박하니까 마치 무슨 서민들의 전도사인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금융질서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론스타 문제는 어떻게 저렇게 처리합니까? 양심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MB 정권이 망가뜨린 이 금융질서를 회복시키는 문제, 저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법 하나 놓고 '금융질서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민주통합당이 이 법을 막아 달라……' 참 염치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지호 위원 야당에서 여당을 비판하시고 공격하실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십니다.

'청와대의 청부입법을 하지 말라' '청와대 오더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의 정당인가?' 그리고 '그러한 담합을 획책하는 당·정·청 회의를 하지 마라'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당은 당의 입장이 있고, 당이 또 당론이 있는 게 아니고 소속 의원들의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달라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또 이제는 '왜 당·청 간에 일치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신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 정권에 국한돼서 벌어진 금융 부패·비리 사건이 아니고 여러 정권에 걸쳐서 진행돼 온 사건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그럴 듯한 간판을 달아주고, 예금보호 한도를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게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돈이 안 몰린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해외 부동산PF 대출을 허용해 주면서 돈 나가는 출구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이 방금 전에 언급하신 '캄보디아 부실 대출'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늑장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최근 3개 정권의 문제점들 아닌가.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파적이고 그런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저축은행특위 마무리하면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원 특별법, 금융당국과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방법이 예보 기금에서 한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권의 타 업권의 재산권도 침해할 수 있다든가 또 우리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장님께서는 차후에 부실 저축은행이 발생되더라도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지만 만약에 1년 후에 2년 후에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상? 그렇다면 분명히 이 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와 유사한 입법을 해 달라고 또 국회의원들을 달달 볶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또 이후 벌어질 문제에 있어서의 일정한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2소위로 회부하든가 해서 좀 더 지혜를 모아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政務委員長 許泰烈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위원장 우윤근 이상 토론을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학재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고 오늘 100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쟁점을 갖고 이렇게 긴 시간 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김학재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 문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위원 금감위원장 말이지요. 이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은 정부 측도 인정을 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학재 위원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을 못합니까? 이유가 뭐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열심히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학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해서 4년 지났지요? 이명박 정부 초기나 중기 때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었다, 그 숫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것 인정하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학재 위원 무슨 어느 정권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라도 일찌감치 감독 책임을 제대로 했더라면 부실화를 키우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김학재 위원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위 로비 관련해서 금감위나 금감원 직원들이 대량으로 사법처리 됐잖아요, 그렇지요? 대량으로 사법처리 됐잖아요. 그 숫자가 뭐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법처리 안 된 직원이 오히려 더 적지 않느냐 할 정도로 많은 금감위·금감원 간부들이 사법처리 됐다. 그러면 지금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감위에서 제대로 이걸 감독 못 했다, 소위 금품을 받고 그런 부분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 한 분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분은 여러 직책에 있으면서 그분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고, 금감원에서 검사에 임했던 분들 중에 일부 그런 혐의가 있어서 지금 재판이 몇 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하는 방안을 저는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법으로 만드는 것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 두는 것은 이 법사위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강구를 해서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들 보상 그런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없나요, 법을 안 만들고도?

○금융위원장 김석동 저희도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수단 등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재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피해자들이 한 8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김학재 위원 그리고 대부분 또 영세한 사람들이 노후자금을 신용금고에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저축은행에? 그렇다면 정부가, 이게 한 1000억 정도면 된다면서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55%를 보장하면 1000억 정도 됩니다.

○김학재 위원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자면.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학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굳이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서 꼭 보호를 해야 되느냐.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것 좀 검토를 하세요, 여기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政務委員長 許泰烈 위원장님, 저 잠깐만 좀 한 말씀……

○위원장 우윤근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영선 위원 이제 그만 하시라 그러세요. 이제 그만하셔요.

○政務委員長 許泰烈 아니, 우리 박영선 위원께서 우리 한나라, 새누리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박영선 위원 그만하시라 그러세요, 그만.

○政務委員長 許泰烈 이 법은 양당이 다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새누리당만 공격을 하십니까?

○위원장 우윤근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 공히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전에도 여야 간사들하고도.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것 국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위원들 공히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전체 법사위에 계속 계류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우윤근 예.

○신지호 위원 34번이요, 온실가스 배출권……

○박영선 위원 거기까지 아직 안 갔어요.

○신지호 위원 그것도 지금 의결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34번까지?

○위원장 우윤근 예, 34항까지도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선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상정이 안 됐는데?

○위원장 우윤근 상정됐습니다, 34항까지.

말씀하시지요.

○신지호 위원 이것도 법안을 보니까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에 대해 법에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대부분의 것들을 그냥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위원장 우윤근 그것도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위원 예,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33항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수 조항들이 죽 들어 있는데요. 49조제4항 처분시한과 관련된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위가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서 처분시한이 최장 10년도 가능해지고 또 조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 5년만 지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49조4항에 따르면.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수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장 우윤근 수정이 가능……

방금 설명 들으셨지요? 수정에 동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물론 취지는 5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는 취지니까 그 취지 내에서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 수정을, 우리 전문위원!

○박영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이것 수정을 하셔서 통과시키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예, 그 조항은 그런 취지 내에서……

○박영선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말씀……

○위원장 우윤근 예.

○금융위원장 김석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의안 제29번입니다.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부분만을 삭제하고 의결해 주시면 정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동의를, 간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러면 금융위가 정하는 부분을……

○박영선 위원 그것 삭제하면 의미가 없지.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위원장 우윤근 그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대로……

○금융위원장 김석동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의견은 말씀하시지요. 의견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박영선 위원 됐습니다. 다 압니다.

○위원장 우윤근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원안대로……

○금융위원장 김석동 이 부분은 정말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에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아니, 아까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금융위원장 김석동 아니,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사례는 어떤 법률에도 없습니다. 이게 최초의 사례가 되는데 이것이 헌법과도 정면 배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윤근 하여튼 그 의견은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도 공히 그대로 통과하는 게 좋겠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개진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육동한 위원장님, 34호 관련돼서 한 말씀만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우윤근 온실가스요?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육동한 예.

○위원장 우윤근 말씀은 하시지요. 이미 결정은……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육동한 예. 신지호 위원께서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배출권거래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시행을 하려면 개별 정부 행정행위를 갖다가 명확하게 저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녹색성장기본법도 똑같은 패턴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EU도 그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후변화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오늘은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양해말씀드리고, 이것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다시 국회를 열 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3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7항, 제3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31항, 제32항, 제33항의 법률안에……

○박영선 위원 33항은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윤근 제3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히 33항은 조금 전에 박영선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4.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우윤근 다음은 회의순서를 잠시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0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0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0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0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이상 5건의 법률안과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요약본 유인물 8쪽입니다.

의사일정 102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0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법안들입니다.

의사일정 10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개 조항, 의사일정 103항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개 조항, 의사일정 104항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안은 1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제103항, 제104항의 법률안과 규칙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제10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5.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안민석·조정식·원혜영·강기정·신낙균·김춘진·김진애·최종원·유성엽 의원 발의)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정두언·이종혁·원희목·김세연·박보환·조전혁·조진래·권영진·임해규 의원 발의)

3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창일·김영록·강기정·김동철·박상돈·양승조·최철국·노영민·이춘석·이시종·조정식·김성곤·김기현·조배숙 의원 발의)

3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김성곤 의원 발의)

3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김세연·김옥이·김태환·조전혁·이진복·고흥길 의원 발의)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4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7시29분)

○위원장 우윤근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5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의사일정 제35항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료 감액을 규정하는 제5조3항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감액과 사용료 면제는 서로 다른 내용에 해당하므로 새로이 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일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2012년 4월 1일로 수정한 외에 일부 경미한 조문의 체계정리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시행일을 2012년 4월 1일로 수정한 외에 체계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와 자구 검토 결과 안 제8조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시행일을 2012년 3월 1일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을 체계에 맞게 재배치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발의)(김성동·김혜성·허원제·원희목·한선교·오제세·이애주·강명순·손숙미·이철우 의원 발의)

4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조배숙·유선호·김부겸·김성곤·정장선·장병완·조영택·김우남·전현희·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4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유선호·김부겸·김성곤·정장선·장병완·조영택·김우남·전현희·백재현·김재윤 의원 발의)

4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4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이경재·최인기·한선교·이낙연·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

(17시32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 김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이상 5건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잠깐 검토보고 전에요,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말씀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의사일정 제43항하고요, 제46항은 상정을 보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46항은 제가 오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공현민, 그러니까 최구식 의원 비서 공현민의 파일에서 나온 각종 서류를 보면 '사행성감독위원회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의 모든 자료를 수집할 것' 또 '문화관광부에 현재 국내 온라인 카지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승인절차를 알아볼 것' 등등 해 가지고 2011년 8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이 법안과 관련된 검토사항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DDoS 공격사건과 이 법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우윤근 예, 이렇게 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는요, 43항하고 46항은 당초 문광위에서 올라온 대로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상임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부하고 문광부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43항 같은 경우에. 또 이 46항도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이 문광위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1일 날인가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자체가 사행성 심의와 관련된 법안 자체의 그 핵심이 빠진 채로 지금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근 아니, 충분히…… 이렇게 하시지요.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지금 법사위에 법안이 넘어와 있지가 않고요, 그 사이에 이게 누군가가…… 수정이 돼 가지고 법사위에 법이 넘어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위원장 우윤근 우리 수석전문위원, 국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수정이 됐어요? 처음 듣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박영선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법안 2개가 그렇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위원장 우윤근 하여튼 43항, 46항은 일단 상정은 돼 있는 상태니까 심사를 보류하고요, 나머지……

○박영선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46항은……

○위원장 우윤근 아니, 그건 심의를……

○박영선 위원 이 DDoS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우윤근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우선 나머지 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지요. 상정된 상태로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항, 45항, 47항만 하시고 나머지는 좀 더 경위를 알아본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4항 전파법 개정안입니다.

일부 조문의 표현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7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은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비하여 일반법으로서 지원기준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서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상충되므로 동 법안을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43항과 46항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고 44항, 45항, 4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결을 해야 되겠는데 의결이, 지금 정족수가……

○박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세요, 일단.

○위원장 우윤근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까 43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우윤근 그건 하여튼 경위를 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결하기 어려우니까요.

의견이 있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뭐냐 하면 아까 박영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국어 교육이 지금 외국에서는 세종학당하고 교육원이 하고 있는데 교육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어를……

○위원장 우윤근 아니, 내용보다 그 절차가, 지금 원안이 수정이 돼서 왔다는데 그 경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그걸 기재부와 교과부, 문광부가 같이 얘기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영선 위원 암만 합의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법을 마음대로 고쳐 가지고 법사위에다 넘겨요?

○위원장 우윤근 아니, 그 절차를 밟아서 넘어왔는데 그 경위는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건 범죄행위예요. 누가 마음대로 저렇게 고쳐 갖고 법을 갖다 넘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우윤근 정회를 했다가 이따 개의시간은 저희들이 의사정족수가 되는 데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1인)

김학재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신지호 우윤근 이두아 이용희
이은재 이춘석 주성영

○청가 위원(1인)

이주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5인)

김무성 박기춘 박민식 유기준
허태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	전상수
전문위원	문광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육동한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상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석
경찰청차장	김기용
소방방재청장	이기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금융위원장	김석동
한국은행부총재	이주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종우
선거실장	김용희